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09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이언주·허성무·박민규

민병덕 · 소병훈 · 정진욱

김현정 · 조계원 · 안도걸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루 어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있음.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사고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법률 제 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개설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 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제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운영) ① ~ ③ (생 략)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	4
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	
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u>공제조합의 조합원으</u>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로 가입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	<u>가입할 수 있다</u> . <u>다만, 보건복</u>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	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개
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설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단서 신설>	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
	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
	<u>여야 한다.</u>
<u><신 설></u>	⑤ 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u>납부하여야 한다.</u>
<u>⑤</u> · <u>⑥</u> (생 략)	<u>⑥</u> ⋅ <u>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